

#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문장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3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  
발 의 자 : 문장길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최웅식, 김평남, 홍성룡,  
김태호, 김춘례, 이현찬,  
경만선, 정지권, 최정순,  
김혜련, 송정빈, 유 용,  
서운기, 김경영, 성흠제,  
이정인, 오현정, 이승미,  
이영실, 송도호, 채유미,  
김정환 의원(22명)

## 1. 제안이유

- 5.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과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법과 특별위원회를 제정 및 운영 중에 있으며, 시민들 또한 과거에 비해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- 하지만, 아직도 일부 온라인 및 SNS상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롱 및 폄하 등이 나타나는 등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.
- 이에,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홍보와 정신계승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그 공로를 인정하는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시장으로 하여금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해 표창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함(안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제8조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표창)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제7조</u> (생 략)</p>	<p><u>제7조(표창)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8조</u> (현행 제7조와 같음)</p>